

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20. 11. 29.>

개정 예고문

「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회규관리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. 05. 04.

대한체육회장

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

일부개정 사전예고

1. 개정 이유

-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스포츠기구의 요구 수준 반영 필요성이 증가하여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유치 및 개최 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체육회 선정절차를 통해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의 명칭 및 정의 변경(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, 제15조, 부칙)
- 나. 체육회 선정절차 운영의 정책타당성 확보를 위한 유치희망도시 제출 서류 및 작성내용 구체화(제2조, 제4조)
- 다. 국제스포츠기구 선정절차를 준용하여, 현행 선정절차 상 주요 의사결정기구(국제위원회, 이사회, 총회)의 기능 및 역할 재정립을 통해 체계 개선(제5조)
- 라. 평가위원회 요청에 따른 유치희망도시의 보완자료 제출 절차가 필요한 경우, 국제위원회를 통해 사전 승인(제9조)
- 마. 협약서 내, 유치추진도시로서의 준수사항 구체적 명시(제10조)
- 바. 선정절차 이후의 후속조치에 대한 조항 신설(제11조, 제12조)

- 사. 유치추진도시에 대한 제재 추진 근거 및 제재 기준·처리절차 세부화(제13조)
- 아. 개정(안)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례 명시(부칙)
- 자. 규정 체계상 표현 보완을 위한 일부 자구 수정(제3조, 제5조, 제7조, 제9조, 제11조)
- 차. 조문 신설에 따른 조항 번호 변경(제13조, 제14조, 제15조, 제16조)

3. 의견제출

- 이 「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」의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한체육회 법무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/이유
- (2)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주소

나. 의견 제출할 곳

대한체육회 법무팀 이메일 주소: law@sports.or.kr

다. 의견제출방법: 이메일

- 붙임 1.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업무 관리 규정 일부개정 1부.
-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